

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[안]

개정근거

-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(2015.9.30.)

개정 주요내용

-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마련
-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 반환 의무화

시 행 일

개정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첨부 : 신구조문대조표 1부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
<p>제16조의2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<u>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 신 설 ></p>	<p>제16조의2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<u>아래표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대가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font-size: small;">구 분</th> <th style="font-size: small;">원장</th> <th style="font-size: small;">연구직</th> <th style="font-size: small;">기타직원</th> <th style="font-size: small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상한액</td> <td>400</td> <td>300</td> <td>230</td> <td rowspan="2" style="font-size: small; vertical-align: middle;">원고료 포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1시간 초과</td> <td>300</td> <td>200</td> <td>1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원장	연구직	기타직원	비고	상한액	400	300	230	원고료 포함	1시간 초과	300	200	120
구 분	원장	연구직	기타직원	비고											
상한액	400	300	230	원고료 포함											
1시간 초과	300	200	120												